

K SOX Newsletter

Feb 2022

KPMG 삼정회계법인

K SOX TFT

목차

Section I. Law & Regulation.....	2
1.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2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보고	5
Section II. Articles	7
1. 「감사위원회 저널」 Vol. 20 발간.....	7
2.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 3 발간	8
Section III. Q&A	9
1.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 판단 시 고려사항 문의	9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제재사항 문의.....	10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교육행사 소개	12
1. [삼정 KPMG]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12
2. [상장회사감사회, 삼정 KPMG]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점검사항 - 부정사례를 중심으로-.....	12

Section I. Law & Regulation

1.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인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감사 품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2022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은 그간 운영된 동 제도의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개선과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2022년 1월 17일 확정 공표됨

(1) 주요 개정사항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변화하는 감사환경을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위해 <표1>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21일 개정안을 공고하였고, 후속된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 확정 내용을 2022년 1월 17일 공표함

<표1> 표준감사시간 개정 절차

일정	내용
2021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2021년 6월~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례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청취 리뷰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 및 결과, 개선이슈 등에 대한 논의
2021년 5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는 4차례 심의를 실시
2021년 12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2022년 1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표2>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제5조 제7항]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기업 개별 특성 고려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지 않음 기업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본문과 상세지침에 반영²
② [제5조 제4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 단,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가 처음 실시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본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삭제 FAQ를 통해 기업의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학습효과³를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

¹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2022. 01. 17

²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FAQ49에 반영

³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업무에 약 10%의 학습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30%(순수지주사 15%)와 35%(순수지주사 17.5%)를 가산할 수 있음	제도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③ [제5조 제3항] 상한·하한 삭제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은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50%를 상한으로 하고 100%를 하한으로 함 단, 그룹3~그룹10⁴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130%를 상한으로 하고, 적용 표준감사시간은 3년간 최초 적용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200%를 한도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2022년부터는 기존의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을 삭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전 사업연도보다 감사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 반영 만약, 2022년 이후에 표준감사시간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의 상한·하한은 부칙에 경과규정으로 반영
④ [별표1~별표10]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룹1~그룹10⁴ 그룹별로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다르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감요인과 가감율을 상장사(그룹1~그룹6⁴)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그룹7~그룹10⁴)의 두 가지로 통합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준감사시간 산정 시 혼란 방지
⑤ [부칙 제2항] 2022년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부칙에서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⁴의 기간을 2021년까지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2년에는 2021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그대로 1년 더 적용 2023년 이후 적용률은 2022년 하반기에 심의 예정
⑥ [부칙 제4조] 유한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종전	변경

⁴ 그룹별 시행시기와 표준감사시간 적용률

그룹 분류	기준(개별자산)	시행방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룹1	2조원 이상 (연결규모 5조원 이상)	2019년 시행	100%	100%	100%	100%
그룹2	2조원 이상 상장사	2019년 시행	100%	100%	100%	100%
그룹3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019년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95% 이상
그룹4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년 시행 단계적 적용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95% 이상
그룹5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상장사	2019년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6	5백억원 미만 상장사	2019년 시행 단계적 적용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7	코넥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019년 시행 단계적 적용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8	1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2019년 시행 단계적 적용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0% 이상
그룹9	5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0년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7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그룹10	2백억원 이상 5백억원 미만 비상장사	2021년 시행 단계적 적용	유예	유예	70% 이상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한회사도 2022년부터 비상장사에 포함하여 표준감사시간 적용
⑦ [제5조 제8항]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 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마련	
종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회계/감사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표준 감사시간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 회계/감사기준(예: IFRS 17 등)의 변경 시 해당사항을 조정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표준감사시간 가산율 삭제⁵

- 정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의 40%(순수지주사 20%)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표준감사시간으로 가산해왔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가산율이 삭제되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은 회사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률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재무제표 감사 대비 40% 이상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투입한 회사가 약 59%에 달함
- 회사의 개별특성과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감사계약 시점에 추정된 감사시간과 실제로 수행한 감사시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동 차이로 인한 금액을 감사보수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3) 참고사항⁶

- 감독당국은 지난 2021년 10월,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시장의 오인을 불식하고자, 명확한 유권해석을 안내한 바 있음

〈표3〉 표준감사시간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기업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했다면,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실제감사시간이 낮다고 하여 해당 사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⁵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FAQ”, 2021. 01

⁶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2021. 10. 18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보고

- 외부감사법⁷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해야 함
- 정기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기업의 감사(위원)들을 위해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안내함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기업이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자진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관련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 시 고려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모범규준 문단95는 감사(위원회)가 <표4>의 내용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였을 시, 독립적인 평가가 수행되었다고 정의함

<표4>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를 위한 활동

감사(위원회)의 활동	활동에 대한 설명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 계획의 적정성 검토	• 당기의 변화관리사항과 위험평가 분석내용을 포함한 연간 운영계획이 보고되는 지를 확인하고 평가기간과 평가시점, 평가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 경영진으로부터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이 누락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지 확인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평가분류의 적정성과 개선조치가 실효성 있는지 여부와 그 이행현황을 모니터링 해야 함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위반사항이나 미비점 발생과 관련하여 성과평가 반영여부와 그 계획에 대해 점검해야 함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 등을 통해 감사계획 전반과 각 시점별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외부감사법상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부정신고제도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부정신고제도로 접수된 내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 **(평가회의 방식)**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대면⁸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참석자 현황과 주요 발언 내용은 문서화해야 함

⁷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⁸ COVID19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원격 통신수단도 허용되나, 음성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것에 한정함

- (평가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보고) 평가보고서는 외부감사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해야 함

〈표5〉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 사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 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책임은 대표 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기업의 경영진에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사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평가 기준으로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 그 밖에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의 시정계획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 보고서 일자 • 감사(위원회)의 서명 날인 • 별첨: 상세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 B.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2022년 2월 7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표6〉과 같음

〈표6〉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주요 개정사항

개정사항	대기업	중소기업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신설함 	
사업연도 중 인수(합병)한 사업단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업연도 중 인수(합병)부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상 애로사항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인수(합병)한 사업부문이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 대상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사유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감사(위원)의 평가보고서 의견표명 문구 변경 -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변경 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규정 발표일(2022년 2월)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함

Section II. Articles

1. 「감사위원회 저널」 Vol. 20 발간

-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2월 7일 「감사위원회 저널」 Vol.20을 발간하였음
- 특히, 기업이 준비 중인 사업보고서 상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항목의 잦은 오류 유형과 Best Practice를 소개하고, 자금 횡령·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포인트를 통해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표7〉 주요 내용

ACI Insight I 사업보고서 상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 항목의 잦은 오류 유형과 Best Practice -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항목과 2022년 예상되는 중점점검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을 분석하여,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과 Best Practice 및 2022년 1/4분기에 공고될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내 감사위원회 관련 예상 주요 공시 항목을 안내함
ACI Insight II 자금 횡령·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중요 자산인 자금은 취약한 내부통제를 운영하는 경우 횡령·유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Global Audit Committee Practice 해외 거버넌스 사례: APPLE, TES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무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Apple과 Tesla의 이사회 구조를 분석해보고 두 기업의 거버넌스에 대해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Depth Interview 감사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 검증 절차 제대로 운영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감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삼성KPMG ACI 자문위원인 이만우 교수님의 고견을 청취
Opinion Leader’s View 해외 M&A 성공을 위한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검토사항

- 최근 한국 기업들이 해외 M&A (cross-border M&A)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해외 M&A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안건임에 따라 사외이사들 역시 해외 M&A의 성공요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Case Study I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정 주체와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예외사항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회사는 동 위원회가 수인(數人)이기에, 한날·한시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으나, 법에서 정한 조건하에 약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특정 위원은 교체 가능함

Case Study II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시, 회사특성에 따른 관계 법규 차이 비교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회사들을 위하여 각 특성에 따른 관계 법규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하여 안내함

Beyond Data

국내 주요 기업 여성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비중, 경력, 연령 등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주요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2018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특히 2021년 3분기는 2020년 말 대비 급증함

Law & Regulation I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 1년 연기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 전반의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

Law & Regulation II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 2022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 내용은 그간 운영된 동 제도의 타당성 여부의 검토와 기업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주요 개선과제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2022년 1월 17일 확정 공표됨

ESG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방향과 향후 이슈 및 대응과제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공시기준 제정방향과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향후 이슈와 이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대응과제를 안내함

Event / News I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발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진흥원, 삼정KPMG는 공동으로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망라하여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를 2021년 12월 발간함

Event / News II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3」 발간

- 아래 세부내용 참조

2.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 3 발간

-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은 각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 임·직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
- 특히, 금번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중 회계영역을 별도로 분류하여 양국 간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표8>와 같음

〈표8〉 주요 내용

<p>‘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영역의 주요 비적정 사유는 한미 공통으로 ‘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과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이외에 ‘정보기술(IT) 통제 미흡’과 ‘업무 분장 미흡’과 같은 내부통제 원칙과 관련한 비적정 사유의 비중이 높음 • 반면 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의 구축과 운영 부실로 인한 ‘범위 제한’이나 특수관계자 등과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로 인한 ‘자금 통제 미비’ 사례가 많음
<p>‘당기 감사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및 ‘전기재무제표 재작성’을 초래하여 감사의견 제한의 원인이 된 주요 ‘회계처리(Accounting)’ 영역은 양국이 상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관계/종속기업과의 거래 및 투자’(14.7%)와 ‘금융자산(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제외)’ (14.7%) 관련 회계처리 이슈가 가장 많음 • 미국은 ‘수익인식’(20.8%)과 ‘세무회계’(9.6%) 분야의 이슈가 다수임
<p>한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과 회사(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비중이 90%를 초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회사의 평가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무(0%)함 • 한국의 경우,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간의 의견 불일치 비중은 84개(96.6%)이고, 감사(위원회)와의 의견 불일치 비중은 83개사(95.4%)로 매우 높음
<p>미국은 소규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면제하나, 회사(경영자)의 자체 평가 및 평가결과 공시 의무는 동일하게 부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가 면제됨에도, 회사의 자체평가 결과에 ‘중요한 취약점’을 포함하여 공시하는 기업은 2020년 1,183개사로 대상 기업의 38.6%에 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는 데 물적·인적 제약이 있음을 방증함 • 또한 ‘중요한 취약점의 유무’보다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더 중시하는 미국 감독당국의 감독방향을 보여줌

Section III. Q&A

1.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 판단 시 고려사항 문의⁹

<p>Q.</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을 앞두고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을 고려 중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현재 경영기획 그룹장(상근이사)으로 재직 중임(재무부서나 CFO 경력은 없음) • 만약, 현 시점에서는 적격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이후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적격성이 보완되는 지 문의함
<p>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관계 법규]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p> </div> •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의 적격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판단

⁹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Q&A “내부회계관리자 적격성 판단”, 2021. 10. 07

할 수 있음

[관련 원칙]

원칙 4. 적격성 유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성 있는 인력을 선발, 육성하고 관리한다.

보론 A.18 적격성 평가 및 보완 (문단 41.2)

적격성은 부여받은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의미하며, 관련된 적절한 기술과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회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적격성의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경험
- 특정 직위 수행에 필요한 판단의 성격과 수준, 권한의 한계
-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기술과 경험에 따른 비용과 효익의 분석

- 문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은 적격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적격성의 판단은 교육 외에도 전문성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제재사항 문의¹⁰

Q.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회사는 5개사'로 나타남
 - 비적정의견 4개사, 의견거절 1개사
- 만약,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 지 문의함
 - 또한,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는 계도 위주로 시행 중인데, 본격 감리 시의 조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함

A.

- 관계 법규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회사¹¹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2개 사업연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 중이라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음

[관계 법규]

외부감사법 제15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②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남은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¹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Q&A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21. 09. 30

¹¹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는 중요한 취약점이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임

2. 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또한,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감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리 결과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음

[관계 법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 등의 착수)

- ⑧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기준

3-가-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조치 등의 기준

1-나-1)-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추가로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투자주의 환기종목)

-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2. 수시지정: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해당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재무요건의 적용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 파.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보통주식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이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 마지막으로, 계도 위주 감리와 본격 감리 시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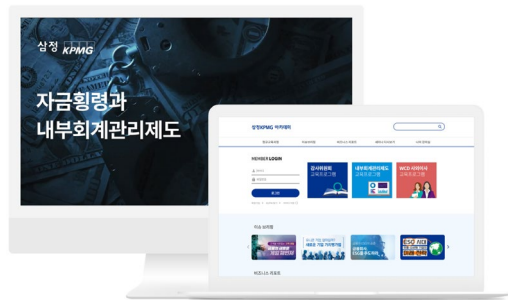
대상	계도 위주 감리	본격 감리
----	----------	-------

기업의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 •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조치 •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조치
----------	--------------------------------------------------------------------------------------------------------------------------------------------	---------------------------------------------------------------------------------------------------------------------------------------------------------------------------------

News &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교육행사 소개

1. [삼정KPMG]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2021년 4월 오픈한 삼정KPMG 아카데미는 기업 회계투명성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의 횡령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함
- 자금횡령 등의 부정사건을 분석해 보면, 취약한 내부통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삼정KPMG에서는 기업의 경영진과 감사(위원)를 대상으로 횡령 등의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교육영상을 제공함
 - 시청 방법: Youtube, 삼정KPMG 아카데미



[YouTube 바로가기]

- 예고편 [Click](#)
- 본편 1강 [Click](#)
- 본편 2강 [Click](#)

[삼정KPMG 아카데미 바로가기]

- 무료 회원가입 후 시청가능 [Click](#)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과정(심화)
- 감사위원회 교육과정(Special Topic)

- 문의: 신정민 과장(02-2112-7731, jungminshin@kr.kpmg.com), 김영재 연구원(02-2112-3305, ykim91@kr.kpmg.com)

2. [상장회사감사회, 삼정KPMG]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점검사항 -부정사례를 중심으로-

- 상장회사감사회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2차 특별강연(온라인)을 개최함
- 금번 강연 주제는 '부정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점검사항 -부정사례를 중심으로-'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 27(일), 사전녹화분 온라인 송출(약 1시간)
- 문의: 연수팀(02-2087-7214, auditor@klca.or.kr)